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		

2020년 3월 31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월 31일(화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3. 30.(월)	담당부서	신재생에너지정책과
담당과장	오승철 과장(044-203-5360)	담 당 자	임기홍 사무관(044-203-5364)

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·공포

- 신재생에너지법·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 -
- 국·공유지 활용기간 연장, 임대요율 감면 등 보급 활성화 지원 강화 -
- 태양광 양도·양수 요건, 중간복구 의무화 등 부작용 완화 방안도 보완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지난 3.6일 국회에서 의결된 **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**(이하 '신재생에너지법')」 및 **「전기사업법」 개정법률안이 3.31일 공포**되었다고 밝힘

○ 개정 주요내용은 「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('17.12)」을 위한 재생에너지 **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**하고,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**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** 사항을 담고 있음

○ 이번 개정 법률안은 **공포후 6개월 경과일*부터 시행예정**이며,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법률 시행전에 **시행령,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**하여 **관련제도를 구체화**할 계획임

* 개정내용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 개정 조문별로 시행일이 다소 상이
1) 신·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신설 : 공포일 시행
2) 공유재산內 영구시설물 축조시 지방조례 절차 완화 : 공포후 3개월 경과일 시행
3) 시·도지사의 전기사업관련 인허가 의제 : '21.1.1일 시행

□ **신재생에너지법의 주요 개정내용**은 다음과 같음

❶ **(규제개선 촉진)** 신·재생에너지 관계법령 정비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**규제·제도개선 사항을 「신·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」에 포함**하여 규제개선 촉진을 도모

❷ **(국·공유지 활용 활성화)**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**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 인하**하고, **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**하는 한편,

* 임대요율 : (국유재산) 현행 5% → 2.5%, (공유재산) 0.5%(변동없음)
임대기간 : (공유재산) 현행 10년, 1회 연장가능 최대 20년 → 2회 연장가능 최대 30년

- **공유재산內 영구시설물 축조시 조례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**하는 등 신·재생에너지의 국·공유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

* (현행) 조례로 정하는 절차 준수와 지방의회 동의 필수 → (개정) 조례절차 필수 아님

❸ **(설비안전관리 체계화)** 신·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**신·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·실행** 및 **설비 시공자에게 연1회 사후관리 의무**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 도모

□ **전기사업법 주요 개정내용**은 다음과 같음

❶ **(주민수용성 강화) 태양광·풍력·연료전지 발전사업**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, **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**하여 주민수용성을 강화

❷ **(허가단계 일원화)**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**전기사업 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**

* 사업자 선택에 따라 기존과 같이 개별법령에 따른 인·허가도 가능

❸ **(태양광 양도 요건 강화)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·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**하도록 하되,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**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**를 인정

❹ **(산림중간복구 의무)**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**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**하고,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**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**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**「신·재생에너지법」 및 「전기사업법」 개정**을 통해 "재생에너지 3020 목표" 이행을 위한 **신·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를 개선**해 나가는 한편,

○ 신·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**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**할 계획임

<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>

법	구분	개정내용
신재생에너지법	규제개선 촉진	관계 법령 개정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안건에 포함
	국·공유지	국유재산 임대요율 경감 가능(최대 50%)
		공유 재산의 임대기간 연장(최대 30년)
		공유재산 영구시설 축조시 지방의회 지방조례 절차 완화
	설비사후관리	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계획 매년 수립 및 사후관리 의무부여
전기사업법	주민수용성	사전고지 의무 신설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
	행정절차	개발행위허가 등 의제처리 가능(관계 행정기관 협의)
	양도·양수 요건	양도·양수 가능시점 명확화(사업개시 이후 가능)
	산지중간복구	중간복구 명령 미준수시, 사업정지 명령 가능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임기홍 사무관(☎ 044-203-536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